
사회연대경제 용어정리집



사회연대경제국

목 차

1. 사회연대경제	1
2. 사회연대경제기업	2
3. 사회적기업	3
4. 예비사회적기업	5
5. 마을기업	7
6. 협동조합	8
7. 자활기업	9
8. 소셜벤처 기업	10
9. 사회연대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11
10. 사회적가치	12
11. 사회연대금융	13
12. 공유경제	14
13.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 현황(’26 6월말) ...	15

1. 사회연대경제

① (개념) 구성원 간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민주적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지역사회를 혁신하는 경제활동

※ 국가국제기구에 따라 사회적경제, 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왔으나, 최근 ILO, UN 등 국제기구에서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로 채택 추세

주요 특징

- ▶ (연대·협력)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신뢰 기반으로 상호 협력
- ▶ (민주적 운영) 구성원의 자율적 경영 참여, 1인 1표 행사 등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
- ▶ (사회적 가치 추구)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공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기후위기 대응, 지역순환경제 등)를 우선 추구
- ▶ (지역사회 혁신)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조직·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새로운 방식과 구조를 개발

② (포괄범위) 사회연대경제기본법('26.8.20. 본회의 통과)상 사회연대경제기업은 5대 사회연대경제 핵심 주체와 개별법에 따른 8개 개별 협동조합*을 포함

<사회연대경제 5대 주체>

구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부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중소벤처기업부
근거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07년 시행)	「마을기업법」 (‘26.8.15. 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00년 시행)	「협동조합기본법」 (‘12년 시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1년 법적 근거 마련)
목적·정의	◆ 취약계층 고용 창출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 하고 소득일자리 창출하는 기업	◆ 저소득 실업자의 경제적 자활(자립)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	◆ 조합원이 공동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	◆ 혁신적인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
제도	인증	지정	인정	신고(일반)/인가(사회적)	판별
요건	◆ 취약계층 비율 등 사회적 목적 실현 ◆ 이윤2/3 사회적목적 재투자(정관)	◆ 공동체성(최소 5인 이상의 주민 참여 등) ◦ 기업성 ◦ 지역성 ◦ 공공성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설립 및 운영	◆ 협동조합 지자체 신고·수리 ◆ 사회적협동조합 부처별 신청·인가	◆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전국 총합	3,762개 234개	1,726개 164개	962개 42개	26,539개 1,532개	2,504개 88개

*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공정위), 농업협동조합(농식품부), 수산업협동조합(해수부), 신용협동조합(금융위),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연연초협동조합(재경부)

2. 사회연대경제기업

- ① (범위) 5대 사회연대경제 핵심 주체와 특별법에 의한 8개 개별협동조합을 포함

사회연대경제기업		
8개 개별 협동조합	일반 사회연대경제기업	
	5대 사회연대경제 핵심 주체	기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엽연초협, 중기협, 신협, 새마을금고, 생협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 회사법인, 사회복지법인, 자활 센터 등

- (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요 목적으로 영업활동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일자리 등 제공
 - * 배분가능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30% 이상 취약계층 고용 등의 요건 충족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 (마을기업)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체*
 - * 마을주민 5명 이상 출자, 출자자의 70% 이상 마을주민 등 출자요건과 공동체성·공공성·지역성·기업성을 갖추어야 함(「마을기업법」 제2조·제11조, 영 제14조)
- (자활기업)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사업주체*가 되어 자활근로사업 추진 → 취약계층의 탈수급 유도 및 사회안전망 강화
 - * 기초수급자가 1/3 이상시 자활기업 인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 (협동조합)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민주적 의사결정 등의 특성*을 바탕으로 사업추진 → 조합원의 고용안정 등 권익향상
 -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할 의무 부여(「협동조합기본법」 제6조)
- (소셜벤처) 혁신적인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기업(「벤처기업법」 제6조의10)

< 사회연대경제 유형별 주요 지원정책 >

구분	직접 지원	간접 지원	
		공통	개별
사회적기업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 개발비	판로지원, 교육 및 홍보, 컨설팅, 창업 및 운영 지원, 정책자금 융자 등	세제(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감면, 기부금 인정 등) 모태펀드 운영 등
마을기업	사업비		-
자활기업	인건비, 사업비, 창업자금, 컨설팅비용		사업 및 시설자금 융자
협동조합	-		-
소셜벤처	-		-

3.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의 개념

-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

※ 「사회적기업 육성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

□ 사회적기업의 유형

- ①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 ②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 ③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 ④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 혼합
- ⑤ 창의·혁신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 ①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 ② 유급근로자 고용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 ③ 사회적목적의 실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⑥ 정관의 필수사항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1) 목적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2) 사업내용	(7) 출자 및 용자에 관한 사항
(3) 명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사항의 의사결정방식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사회적기업의 지부, 자원조달, 회계에 관한 사항

⑦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등)

□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4.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의 개념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 (지정기간) 3년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지정요건

①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② 사회적목적의 실현

-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③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④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정관에 명시)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요건 비교>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부처형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조례·규칙	지침
요건	❶ 조직형태	❶ 조직형태	
	❷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❷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단, 일자리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 필요)	
	❸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❸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❹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❹ -	
	❺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❺ -	
	❻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❻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❼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❼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 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지정절차



5. 마을기업

□ 마을기업 정의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마을기업 유형

구 분	유 형	내 용
성장 단계	예비 마을기업	마을기업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마을기업
	1회차 (신규) 마을기업	마을기업으로서 존속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업기반 구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해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처음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2회차 (재지정) 마을기업	마을기업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서 건실한 기반 마련을 위해 2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3회차 (고도화) 마을기업	운영성과가 뛰어나고 마을기업 가치를 실현하는 우수한 기업이 대표 마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재기 마을기업	지정취소 기업이 취소 사유를 해소하고, 재기 의지와 지정 요건을 갖추어 다시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목적	청년 참여 마을기업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젊고 유능한 청년 자원을 보강하기 위해 청년이 마을기업 회원의 50% 이상 참여하는 마을기업
	재도약마을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회생의지가 높고 공동체 결성이 끈끈하여 재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마을기업 중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특별히 정책지원을 통해 성장 동력 보완 및 환경변화가 가능한 마을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마을기업
	우수마을기업	마을기업 4대 운영원칙을 모두 갖추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마을기업
	모두썹 마을기업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이 다른 마을기업과 비교하여 우수하며 특히 기업성 측면에서 일반기업과 비교하여도 시장 경쟁력이 뛰어난 마을기업

6. 협동조합

□ 협동조합 개념

-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민주적 의사결정 등의 특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 등 권익향상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 협동조합 종류

- ① (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 조직
- ②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이 설립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의미
- ③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 ④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의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구 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 립	시도지사 신고(시군 위임)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인가
사 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청 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 법인·국고 등 귀속
우선구매	비대상	대상

7. 자활기업

□ 자활기업 개념

-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함으로써 자활을 도모하는 기업
 - 자활사업을 통해 습득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탈빈곤과 자립을 지원하는 기업
 - 청소, 집수리, 돌봄·간병, 폐자원 재활용, 음식물 재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수행
- ※ 충남 자활기업 42개(2026. 9. 기준)

□ 설립요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 (구 성 원)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2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
- (설립방식)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형태로 설립
- (인정절차) 설립 및 운영 요건을 갖추어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함

□ 지원내용

-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자활기업 창업자금 등 창업·경영 지원
- 기계설비 및 시설보강사업비 지원
- 우수자활기업 지원
- 수급자·비수급자·전문인력 한시적 인건비 지원
-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지원

8. 소셜벤처 기업

□ 소셜벤처기업 개념

- 사회적 가치(사회문제 해결)와 경제적 가치(수익 창출)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면서,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는 기업

□ 소셜벤처기업 판별 요건

- 소셜벤처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 전제 조건을 충족한 후, 사회성 및 혁신성장성 평가를 통과해야 함
 - 기본 전제 조건 : 상법상 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 * 업종제한 : 유흥주점, 사행시설 등 일부 업종은 판별 대상에서 제외
 - 판별 세부 기준 : 사회성, 혁신성장성 2가지 영역 각각 70점 이상
 - ① 사회성 : 사회적 가치 추구성 · 문제 해결능력, 대표자 의지 · 경력
 - ② 혁신성장성 :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R&D 및 지식재산권

□ 관계 기관 및 역할

구 분	기 관	역 할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관련 법령 제·개정 및 고시 운영
판별 및 지원기관	소셜벤처스퀘어	· 소셜벤처기업 판별 심사 및 판별통지서 발급
	기술보증기금	· 임팩트 보증 등 전용 금융 지원 프로그램 운영
투자기관	임팩트 투자사	· 소셜벤처 펀드 운용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 소셜벤처기업 관계 법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 벤처기업법)
-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9. 사회연대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 우선구매 필요성

-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로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며 공공기관의 윤리적 소비 촉진과 위상을 정립

□ 우선구매 개요

- (정의) 공공기관이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함
- (대상기관) 도·시군 및 출자출연기관
- (구매품목) 물품, 용역, 공사 등 재화 및 서비스
- (추진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2조의2
협동조합기본법 제95조의2 및 시행령 제26조
※ 마을기업 공공구매는 별도의 법령 없음

【 관련법률 】

①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 협동조합기본법 제95조의2

-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사회적가치

□ 사회적가치

- 경제적 회계가 측정할 수 없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 등에 기여하는 가치를 의미하며, 사회적가치 실현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공익(Public interest)의 실현”을 의미

□ 사회적가치지표 (SVI: Social Value Index) / 고용노동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 운영을 통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보다 종합적 ·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
- 사회적가치지표(SVI) 총괄표

관점	범주	영역	측정지표	배점
사회적 성과(60)	조직 미션 (7)	사회적 미션 (7)	1.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	2
			2.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여부	5
	사업 활동 (35)	주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15)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비계량 지표)	15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10)	4.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수준	5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5
		사회적 목적 재투자 (10)	6. 사회적 환원 노력도 (비계량 지표)	10
	조직 운영 (18)	운영의 민주성 (5)	7.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5
		근로자 지향성 (13)	8. 근로자 임금수준	8
			9.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5
경제적 성과(30)	재정 성과 (30)	고용창출 및 재정성과 (25)	10. 고용성과	10
			11. 매출성과	10
			12. 영업성과	5
		노동성과 (5)	13. 노동생산성	5
혁신 성과(10)	기업 혁신 (10)	기업 활동의 혁신성 (10)	14. 혁신노력도 (비계량 지표)	10
계		14개 지표		100

※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선정 시에 활용

11. 사회연대금융

□ 사회연대금융

-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사회연대경제 관련 사업에 투자·융자·보증 등을 통하여 자금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추구하는 금융활동

※ 일반 금융과 달리 재무적 수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함께 고려하며,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금 조달과 성장을 지원. 사회연대금융은 투자·융자 등을 통해 수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자산기부와 구별됨

□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 사회연대금융을 수요자와 투자자·금융기관 사이에서 연계하고, 대출·투자·융자 및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는 기관
 - 지역기금·민간기금의 관리·운용,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창업·성장 지원, 금융기관과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중개 등의 역할 수행

※ 마이크로크레딧신나는조합, 한국사회혁신금융주식회사(사회적기업) 등

□ 임팩트(impact) 투자

- 재무적 수익과 함께 사회·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창출하는 기업이나 사업에 투자하는 금융
 - ※ 운용사 : MYSC, 임팩트스퀘어 등

□ 충남사회적경제기금

-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제도권 금융 접근 및 사회적가치 평가를 통한 자금지원
 - 200억원 운용(신협재원), 20억원 조성(도), 5년간('25 ~ '29), 사회연대경제기업 융자
 - 기금융도 : 융자 시 미회수 손실액 기관분담, 이차보전, 투자 등
 - 설치연도 : 2020년 7월 (조례제정 : '19. 10. 30.)
 - 기금융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4년말 조성액	'25년도 운용현황			'25년말 조성액	'26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350	70	162	△92	1,258	40	370	△330	

- ▶ 융자조건 : (기간) 신용 5년, 담보 10년 이내, (용도) 시설, 운전 자금 (한도) 신용 1억5천만원, 담보 2억원 이내
- ▶ 소액·신속 대출 프로그램 운영 : 30백만원 이하
- ▶ 사회적가치 평가 위주의 대출 심사 (30백만원 이상)
 - 사회적경제 평가시스템 적용(신용보증기금) + 충남도 지표 가점
- ▶ 이차보전 : 사회적가치평가 등급에 따른 최대 2% 이차보전을 통한 실금리 1% 내외

12. 공유경제

□ 공유경제 개념

-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소비를 기본으로 하며, 지식과 재화를 소유의 대상이 아닌 공유로 인식하고 이용해 생활하는 경제체제
- * 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 이후 로렌스 레식 하버드대 법대 교수에 의해 처음 사용,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특징인 20세기 자본주의 경제에 대비해 생겨난 개념

□ 공유경제 정의

- “공유경제(共有經濟)”란 소유권의 이전 없이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도민의 편의를 높이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
-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
-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

□ 공유경제 현황

-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 소비 패러다임 변화(소유→공유)와 함께 플랫폼·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유희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
- 서울시(2012.9월)에서 ‘공유도시 서울’ 선언 후 부산, 경기, 광주, 대전 등의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 및 정책 추진
- 기획재정부 주관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19.1.9.)
 - 숙박·교통·공간·금융·지식 등 사회 전반의 다양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지원책 마련
- 최근에는 단순한 유희자원 공유를 넘어 공유주차·공유모빌리티·공유공간·공공자원 개방 등 지역의 생활문제 해결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는 추세

13.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 현황

□ 기업수

(2026. 6월말 기준)

구 분	합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합 계	1,930	295	165	105	258	117	143	19	145	92	81	103	92	115	102	98
사회적기업	234	45	17	11	36	17	17	1	16	8	11	10	13	11	10	11
마을기업	164	5	22	10	14	14	16	3	6	12	14	8	12	13	7	8
협동조합	1,532	245	126	84	208	86	110	15	123	72	56	85	67	91	85	79

□ 연도별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조직수	876	1,035	1,181	1,421	1,583	1,709	1,789	1,815
사회적기업	146	184	217	277	281	284	249	241
마을기업	141	151	155	169	180	181	165	160
협동조합	589	700	809	975	1,122	1,244	1,375	1,414
총 매출액	160,745	185,929	172,700	189,565	314,125	377,353	333,674	339,788
사회적기업	109,194	127,625	124,727	128,528	168,800	195,951	154,133	156,951
마을기업	13,041	7,901	7,236	7,014	15,344	18,222	11,056	11,520
협동조합	38,508	50,402	40,738	54,023	128,038	161,352	168,483	171,317
총 종사자수	4,878	5,018	6,234	5,858	3,420	2,799	4,381	4,438
사회적기업	1,706	3,539	2,598	2,463	1,389	1,641	1,678	1,613
마을기업	882	299	902	779	309	506	331	300
협동조합	2,290	1,180	2,734	2,616	1,722	652	2,372	2,525

※ 출처 : 2025 충남 사회적경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충남연구원)

□ 충남 사회연대경제조직 현황

(단위: 개/ '26. 6. 30.기준)

연 번	시군	합계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협 동 조 합				중 복 기 업
			소 계	인 증	예 비		소 계	지 정	예 비	소계	일 반	사 회 적	연 합 회	
					부처	지역								
충청남도		1,930	234	165	24	45	164	159	5	1,532	1,180	348	4	101
1	천안	295	45	33	6	6	5	5	0	245	171	74	0	6
2	공주	165	17	12	1	4	22	21	1	126	103	23	0	13
3	보령	105	11	10	0	1	10	9	1	84	65	19	0	5
4	아산	258	36	27	5	4	14	14	0	208	149	57	2	16
5	서산	117	17	12	1	4	14	14	0	86	67	19	0	6
6	논산	143	17	9	2	6	16	15	1	110	87	23	0	11
7	계룡	19	1	1	0	0	3	3	0	15	10	5	0	1
8	당진	145	16	13	0	3	6	6	0	123	88	35	0	5
9	금산	92	8	5	1	2	12	11	1	72	63	9	0	5
10	부여	81	11	6	1	4	14	13	1	56	43	13	0	12
11	서천	103	10	10	0	0	8	8	0	85	66	19	0	2
12	청양	92	13	8	1	4	12	12	0	67	62	4	1	7
13	홍성	115	11	6	2	3	13	13	0	91	70	21	0	5
14	예산	102	10	7	2	1	7	7	0	85	67	17	1	5
15	태안	98	11	6	2	3	8	8	0	79	69	10	0	2